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목 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지원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계약기간 】

- ① 계약 기간은 입소일로 부터 등급 만료일 까지 로 한다.
-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입소. 이용료 납부 】

- ① 이용료는 월중 입소 시 당일에 기존 입소자는 매월 초 (1~5일내) 선납한다.(납입일이 공휴
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②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 야한다.
- ③ 이용료 납부방법은 현금, 카드, 계좌이체 로 한다.

◇ 시설급여 세부내역 (30일기준)

구 분			2.1대1 운영			2.3대1 운영			비급여 (식비)
			1등급	2등급	3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기준	급여비용(1일)		90,450	83,910	79,240	86,030	79,810	75,360	8,200
	급여비용(30일)		2,713,500	2,517,300	2,377,200	2,580,900	2,394,300	2,260,800	245,000
일반	국가부담(80%)		2,170,800	2,013,840	1,901,760	2,064,720	1,915,440	1,808,640	
	본인부담(20%)		542,700	503,460	475,440	516,180	478,860	452,160	
	식비		245,000			245,000			
	본인부담총액(30일)		787,700	748,460	720,440	761,180	723,860	697,160	
감 경	60% 감경	국가부담(92%)	2,496,420	2,315,920	2,187,030	2,374,430	2,202,760	2,079,940	※ 4,5 등급은 3등급과 동일
		본인부담(8%)	217,080	201,380	190,170	206,470	191,540	180,860	
		식비	245,000			245,000			
		본인부담총금액 (30일)	462,080	446,380	435,170	451,470	436,540	425,860	

내 상	40% 감경	국가부담(88%)	2,387,880	2,215,230	2,091,940	2,271,200	2,106,990	1,989,510	합 계
		본인부담(12%)	325,620	302,070	285,260	309,700	287,310	271,290	
		식비	245,000			245,000			
		본인부담총금액 (30일)	570,620	547,070	530,260	554,700	532,310	516,290	
기초 수급자	급여비용		국가부담(100%)						
	식 비		지자체 부담(100%)						
	본인부담 총금액		면 제						

진찰구분	본인부담금(기준)		
	일반(20%)	감경대상(60%)	감경대상(40%)
촉탁의 초진 (18,410원)	3,680	2,209	1,473
촉탁의 재진 (13,160원)	2,630	1,579	1,053

※ [근거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한다.

2) 세부기준

(1)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2) 상급침실 이용료

-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3)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

【 계약자 의무 】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입소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시설의 의무

1. 건강관리 협조
2. 신변이상을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보호자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의무
4. 입소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보호자에게 통보의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

【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1. (신원 인수인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하여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했을 때는 곧 자기비용으로 원상회복이나 시설에서 산출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계약해지 요건 】

① 입소자의 해지

1. 입소자와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시설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시설의 해지

1.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입소 시 허위사항 보고 및 부정수단으로 입소한 경우.
4. 납부하여야 할 부담금을 1개월이상 체납하였을 경우.
5. 입원 또는 외박일을 1회 10박, 월15박을 초과 시.
6. 기타 입소자가 시설운영과 타 입소노인에게 현저한 피해가 있다고 인정할 때.